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00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김소희 · 이현승 · 백종현
김미애 · 추경호 · 김기웅
유용원 · 김상훈 · 김장겸
우재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능·감축효과·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을 반영한 성과 기반 차등지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공기열 히트펌프 설비의 지원 및 성능기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효율의 향상 및 건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총 공급 열량/총 소비전력량) 2.875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 기준(부분부하 운전, 계절별 부하 특성 등을 포함한다)을 충족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기열 히트펌프 설비의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 및 검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 기준,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설비, 적용 배출계수, 산정 및 검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히트펌프 설비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2. 기존 설비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
 3. 공기열 히트펌프의 에너지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일 것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지원 기준·절차 및 그 밖에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의4(공기열 히트펌프 설비</u> <u>의 지원 및 성능기준 등) ①</u>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u> <u>효율의 향상 및 건물 온실가스</u> <u>배출 감축을 위하여 난방 기간</u> <u>계절성능계수(총 공급 열량/총</u> <u>소비전력량) 2.875 이상 등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제 운전</u> <u>조건을 반영한 성능 기준(부분</u> <u>부하 운전, 계절별 부하 특성</u> <u>등을 포함한다)을 충족하는 공</u> <u>기열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u> <u>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u> <u>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u> <u>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기열</u> <u>히트펌프 설비의 에너지 절감</u> <u>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u> <u>산정 및 검증 결과를 기후에너</u> <u>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u> <u>한다. 이 경우 에너지 절감량</u> <u>및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 기</u>

준,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설비, 적용 배출계수, 산정 및 검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히트펌프 설비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2. 기존 설비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

3. 공기열 히트펌프의 에너지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일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지원 기준·절차 및 그 밖에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